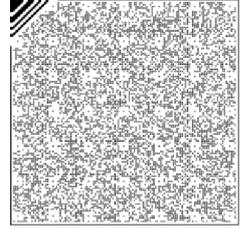




고용노동부

## 대구지방고용노동청



수신 대구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주 귀하  
(경유)

제목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홍보 요청 및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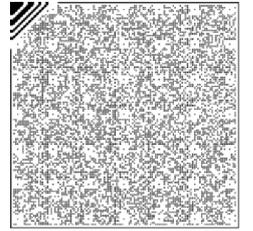
1. 평소 노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,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,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  - 최근, 위 사업(체불청산지원제도)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7. 15.(화) ~ 10. 14.(화)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(사업주용자 최대 2.7%, 근로자 용자 1%)하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1~3 참조)
3. 아울러,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귀사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율점검\*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자율 점검 방법>

- ① (노동법 교육)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<https://labor.moel.go.kr>) 접속 → 노동길라잡이 → 노동법 교육자료에서 「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」 동영상 시청  
※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 법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도감독 → 「노무관리 가이드북」 참조
- ② (자가진단 방법)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<https://labor.moel.go.kr>) 접속 → 사업장 지도감독 →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→ 「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」를 내려받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, 그 자가진단표는 사업장 내에 보관
- ③ (전문가 활용) 자가진단 실시후, 필요시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철저히 노무관리

4. 2024. 10. 23.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(신용제재, 정부지원 등 보조·지원 제한, 공공입찰 불이익(붙임4 참조)),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관리에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25.7.8.용자제도 보도자료 1부.  
2. 체불청산사업 용자 사업 안내 1부.  
3. 관할노동관서 1부.  
4.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부. 끝.

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



---

근로감독관 **박정주** 팀장 **구강미** 과장 전결 2025. 7. 11.  
최정필

협조자

시행 근로개선지도1과-4663 (2025. 7. 11.) 접수

우 421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(범어동 743 대구지방노동청) / <http://www.moel.go.kr/daegu>

전화번호 053-667-6235 팩스번호 0503-8803-0509 / [wjdw1130@korea.kr](mailto:wjdw1130@korea.kr) / 비공개(6,7)